유연학기제운영규정 5-1-58

규정번호 5-1-58
제정일자 2020.10.26
최근개정 2024.7.24
개정차수 2차 개정
관리부서 학사지원팀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유연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“유연학기제”라 함은 학부(과) 및 학년별로 교육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학기제를 말한다.

제3조(신청 및 승인) ① 학과(전공) 및 부서에서 교육과정을 유연학기제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운영계획서 내 교육과정 편성 시 유연학기제 운영 시기를 포함하여 교육과정혁신팀에 제출한다. 다만, 산업체 요구 및 산업 동향 등 교과목 특성을 고려하여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(개정 2024.5.3.,2024.7.24)

② 제출된 교육운영계획서는 교과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(개정 2024.5.3.)

제4조(강의계획서) 유연학기제로 운영되는 교과목의 담당교원은 강의계획서에 운영시기 및 수업형태 등 유연학기제 운영에 관한 특이사항을 포함하여 작성·안내하여야 한다.

제5조(수업일수 및 학점) ① 수업일수는 2주 이상으로 한다.

② 유연학기제의 학점은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.

제6조(수강신청) ① 유연학기제로 운영되는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기간에 강의시간표에 따라 지정된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별도로 처리할 수 있다.

② 매 유연학기에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. 다만, 정규학기 기간 내 운영되는 유연학기제 운영 학부(과)의 수강신청은 학사내규 제3조(수강신청)에 따른다.

제7조(운영취소) 유연학기제 운영으로 정규학기 학사운영의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교과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8조(기타) 등록금 및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하되, 2021학년도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.(제3조제1항·제2항)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제3조제1항)